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70 발의연월일: 2021. 7. 19.

발 의 자:천준호·홍성국·김수흥

박상혁 · 양향자 · 최인호

신영대 · 소병철 · 진성준

고민정 • 양이원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폐쇄 및 전체 반환 이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건설의 장기화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도 시설물 설치,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후 공원과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법률 제 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5조의2(업무의 위탁) 국토교통
		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
		산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u>있다.</u>